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37호 2019. 11. 07.(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624호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625호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626호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사천시 조례 제1627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사천시 조례 제1628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1629호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사천시 조례 제1630호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25
- 사천시 조례 제1631호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 사천시 조례 제1632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18호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 32
- 사천시 규칙 제719호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8
- 사천시 규칙 제720호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 41
- 사천시 규칙 제721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 --- 61
- 사천시 규칙 제722호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94
- 사천시 규칙 제723호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 96
- 사천시 규칙 제724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98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185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 100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사천시 조례 제162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사천시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한 기관의 관계자에게 비의무적으로 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장 또는 위원장이 비의무적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2.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3.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사천시 조례 제162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 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사천시와 사천시 소속 행정기관 및 사천시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어통역) ① 시장은 일상에서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 등이 구직, 직업훈련, 노동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행사, 행정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한국수어의 교육) ① 시장은 농인 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 직원들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관련 정보 제공
2.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제8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사천시 조례 제162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위원장 중 선출된 1명”을 “민간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위원장은 시장이”를 “위원장(이하 “공공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위원장이” 를 “공공위원장이” 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성한다.” 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를 “대표협의체의 공공위원장은 실무분과 위원을 위촉하되”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를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을 고려하여” 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으로 담당한다.” 를 “공동으로 담당하고, 읍·면·동 협의체 업무팀장이 간사를 담당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제9조 중 “공동위원장” 을 “공공위원장”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공동위원장” 을 “민간위원장” 으로, “연임한다.” 를 “연임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의 임기는” 을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 을 “대표협의체 공공위원장”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으로 한다.

제18조 중 “위원장” 을 “공동위원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사천시 조례 제162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회의 부분 중 “시장은”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1.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 여행사 등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6.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7. 관내·외 음식점·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단체 및 관련업체
- ② 시장은 관광홍보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 ③ 관광홍보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
 2. 시 로고와 시 명칭·시 상징물·시정구호 등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등
 4. 절기 등 전통 민속과 음력, 물때 등 해양관련 내용
 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사천시 조례 제162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4.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대상 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7.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10.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제2장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외 소재 사업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전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전입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타 시도 기업의 관내 전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타 시도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에 따라 기업명을 사용하여 명예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특별지원금 추가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투자촉진기반시설 설치) 시장은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관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제10조(임대용지 공급)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지원제한) 시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 조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제16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자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 등

제18조(기금의 조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용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등

제20조(위원회의 설치)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4.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장 보조금의 신청 등

제24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시장은 도지사에게 사업부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제28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29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를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사천시 조례 제162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하여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를 제9조의2로 하고, 제9조, 제9조의3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상인회의 등록)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3(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법 제6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서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의 철회요청서(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 기재)
2.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사천시 조례 제163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삼천포하수처리장 등의 위탁운영 계약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사천시 조례 제163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3호 중 “제11조 제4항” 을 “제11조제4항”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시보” 를 “사천시 홈페이지” 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수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사천시 조례 제163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0m이내” 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
역)을 대상으로” 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
용자를 대상으로 부과·” 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멸시효) 하수도사용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 미납된 하수도사용료,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뇨수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집·운반처리 수수료 : 5년

2. (채무)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 5년

제22조제1항 본문 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를 “제7호” 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6.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를 감면받은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감경량과 감경은 별표 8-2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 \times 2/100 \times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2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8-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연체금 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신 설]

[별표 8-2]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	감 면 대 상	감면범위 및 감면량(율)	비 고
하수도 사용료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5조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으로서 가정용 사용단계 1단계(1~20㎡)에 해당하는 사용자	1단계 사용요금의 30% 감면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사용자	면제	
	3.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대상지의 사용자	면제	
	4.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의 50% 감면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사천시 규칙 제71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및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1. 주요 시정 현안사업
2.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4.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5.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② 실명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기관 등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③ 담당부서에서는 선정되어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사업평가)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 칭 기재	'00.00.00.	○○○ 시장 ○○○ 부시장 ○○○ 국장 ○○○ 관·과·소장 ○○○ 팀장	
○ 내용	'00.00.00.	○○○ 국장 ○○○ 관·과·소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기재항목>

-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 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	② 정책사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기재항목>

-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9-1, 2019-2)
-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사천시 규칙 제71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별지 제2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2. 구 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인적사항	○ 부서명 : ○ 작성자 :						
4. 근거법령등	○					관 련 규제수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 자	※ 인원수 기재						
6. 규제 존속기한							
7. 종전규제 및 신설(변 경) 규 제 의 내용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규제신설의 배경 및 원인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경제·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3-2. 이해관계자 협의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3-4.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사천시 규칙 제72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상수도사업

가. 기업출납원 : 수도업무 부서장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 팀장

다. 지출원 : 수도행정업무담당 팀장

라. 자산출납원 : 자산관리업무담당 팀장

마.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팀장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바. 분임자산출납원 : 각 사무분야별 담당 팀장

2. 하수도사업

가. 기업출납원 : 하수도업무 부서장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 팀장

다. 지출원 : 하수행정업무담당 팀장

라. 자산출납원 : 자산관리업무담당 팀장

마.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팀장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바. 분임자산출납원 : 각 사무분야별 담당 팀장

제2조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대리한다” 를 “그 직을 대리한다” 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후단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으로,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을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으로, “준용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의함” 을 “따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을 “임시 지급금 또는 임시 수령금”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당기손익” 을 “당기순손익”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제76조제1항을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부채” 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 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장부의 기장)” 을 “(장부의 기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기장” 을 “기록”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당해부분” 을 “해당 부분” 으로, “해득” 을 “이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부분” 을 “해당 부분” 으로, “명기한다” 를 “명확하게 기록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배” 를 “공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항” 을 “해당 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약품을 사용하거나” 를 “약품 등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여” 로 한다.

제13조제1호 단서 중 “전기하여” 를 “ 옮겨 적어 ”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계장표와” 를 “관계 장부와 전표를” 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장부의 대사 및 검열)” 을 “(장부의 대조 확인 및 검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조” 를 “대조 확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부기입상황 매월 검열” 을 “장부기입 상황을 매월 검사”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장” 을 “기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를 “결의서와 각종 일계표의” 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지” 를 “수입과 지출” 로 한다.

제18조 중 “수지” 를 “수입과 지출” 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수지” 를 “수입과 지출” 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무인” 을 “손도장”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수지” 를 “수입과 지출” 로, “자서는” 을 “자필서명은” 으로 한다.

제21조 중 “ 「계산증명규칙」 을 준용하여 ” 를 “ 「계산증명규칙」 에 따라 ” 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로, “10일이내에 계속비 이월비요구서” 를 “10일 이내에 계속비 이월요구서” 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를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제29조 중 “의거 사항별, 시시별” 을 “따라 사항별, 시기별” 로 한다.

제30조 중 “일반분개처리한다.” 를 “일반분개 처리한다.” 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계리원칙에 의한” 을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으로, “계리한다” 를 “회계처리한다” 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련지출하기” 를 “마련지출을 하기” 로 한다.

제34조 중 “작성하여 지출예정액” 을 “지출예정액” 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증권에 의한” 을 “증권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입의부자” 를 “납입의무자” 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을 “(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의해” 를 “따라” 로 하며, “기장한다” 를 “기록한다” 로 하고, 제4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기장한다” 를 “기록한다” 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발행하여” 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 를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 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회계관계법규” 를 “회계 관계법규” 로 한다.

제44조 제목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장)” 을 “(사업·자본 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장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를 “기록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자의위임”을 “관리자의 위임”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기장”을 각각 “기록”으로 한다.
제45조 제목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을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고계리”를 “재고회계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장한다”를 “기록한다”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수인”을 “여러 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당해정정부분”을 “해당 정정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수표”를 “해당 수표”로,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기록하여”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의하여 당해분임기업출납원”을 “따라 해당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금교부”를 “자금을 교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34조에 준하여”를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용건”을 “사무나 사업”으로, “5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을 “제1항”으로, “부족”을 “부족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족금”을 “부족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청구서”를 “정산서”로 “개산금”을 “개산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과부족”을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초과액이나 부족액”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인이 다른 경우와 영수인의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3조의 제목 “(반납금의 여입절차)”를 “(지출금의 반납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산금”을 “개산금”으로, “여입하고자”를 “반납하고자”로, “여입결의서”를 “반납결의서”로, “여입하여야”를 “반납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여입”을 “반납”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기장”을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을 “따라 수령증을 받은”으로,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를 “세입세출외 현금의 예금으로”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제60조제1항 중 “제출케” 를 “제출하게” 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 당해출납담당공무원” 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으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 을 “② 제1항” 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출납공무원” 을 “출납담당공무원”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금의 과잉률” 을 “현금이 남는 것
을” 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수수한” 를 “인계인수한” 으로,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 ” 을 “인계인수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 ” 으로, “관
리자가” 를 “관리자에게” 로 한다.

제66조 중 “처리케” 를 “처리하게” 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 27조” 를 “영 제2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당해금융기관” 을 각각 “해당 금융기관” 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집무케” 를 “업무하게” 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사무취급 자” 를 “사무취급자” 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지를” 을 “수입과 지출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동 자
료가” 를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동 자료가” 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76조제3호 중 “수표의” 를 “수표와” 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세출금의 여입)” 을 “(세출금의 반납)” 으로 하고, 같은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세출금 여입” 을 “따라 세출금 반납” 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준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보유자 재” 를 “보유자재” 로 한다.

제84조 본문 중 “통괄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제85조 중 “매사업연도” 를 “매 사업연도” 로, “재고자산대상자” 를 “재고자산 대장상” 으로, “대조하 여” 를 “대조하여” 로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2분기이상을” 을 “2분기분 이상을 일시” 로 한다.

제87조 중 “의거” 를 “따라” 로, “기장” 을 “기록” 으로 한다.

제88조 중 “기장” 을 “기록” 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준공검사 전까지는” 을 “준공검사 전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사하여” 를 “대조 확인하여” 로, “기장” 을 “기록” 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이하는” 을 “미만은” 으로 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중 “재 용도” 를 “재용도”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담당주사” 를 “팀장” 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매사업연도” 를 “매 사업연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외의” 를 “이외에” 로, “천재” 를 “천재지변 등” 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기장관리” 를 “기록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부족” 을 “초과액이나 부족액”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제98조제1항 전단 중 “지체없이” 을 “지체 없이”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 48조의 규정” 을 “법 제48조” 로 한다.

제100조 중 “당해자산” 을 “해당 자산” 으로 한다.

제101조 제목 “(건설가계정)” 을 “(건설 임시 계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건설 가계정” 을 “건설 임시 계정” 으로, “당해고정자산계정” 을 “해당 고정자산계정”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건설가계정” 을 “건설 임시 계정” 으로, “없다” 를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가계정” 을 “건설 임시 계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 건설가계정” 을 “따라 건설 임시 계정” 으로, “건설가계정정산부” 를 “건설 임시 계정 정산부” 로 한다.

제105조 중 “당해고정자산” 을 “해당 고정자산” 으로, “인수케” 를 “인수하게” 로 한다.

제106조제1항 중 “공기업활동” 을 “공기업 활동” 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담당주사는” 을 “팀장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고정자산대장” 을 “해당 고정자산대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000원이 상” 을 “1만원 이상” 으로, “당해고정자산” 을 “해당 고정자산” 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당해고정자산” 을 “해당 고정자산” 으로, “의하여” 를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고정자산” 을 “해당 고정자산” 으로, “고정자산처분손익등” 을 “고정자산처분손익 등” 으로 한다.

제110조제2항 중 “매사업연도” 를 “매 사업연도” 로, “고정자산실지조사 보고서” 를 “고정자산실사보고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기하여야” 를 “덧붙여 적어야” 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수지” 를 “수입과 지출” 로 한다.

제114조제2항 중 “매사업연도” 를 “매 사업연도” 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경우” 를 “경영” 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용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미수금” 을 “해당 미수금” 으로 한다.

제118조 중 “경우를제외” 를 “경우를 제외” 로 한다.

제120조 중 “현재액보고서” 를 “현재액 보고서” 로 한다.

제121조 중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 를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를 “제1항에도” 로, “장표” 를 “장부와 전표”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비치관리하여야” 를 “비치·관리하여야” 로, “전산입력처리하는” 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를 “제1항에 따른다” 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별지 제23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담당자	팀 장	기업출납원

세 항	목	수 입 액		비 고
		건 수	금 액	
합 계				

출납취급 금융기관	
수납취급 금융기관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별지 제25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기 업 출 납 원		발 의	년 월 일	인		
		수입예산정리부등기	년 월 일	인		
팀 장		과오납금정리부등기	년 월 일	인		
담당자		반 환 통 지 서 발 생	년 월 일	인		
		반 환 통 지 서 발 행 번 호	년 월 일	인		
년도 특별회계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일 금 <hr style="width: 50%; margin: 0 auto;"/> ₩ <hr style="width: 50%; margin: 0 auto;"/>						
채 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적						
요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별지 제28호서식 앞면】

지 출 결 의 서

증 계 호									
담당자	팀 장	기 출 납 원	관 리 자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년 도	담 당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장			발 의	. . .	인	
계 약	. . .	인	관			지출예산통계 원장등기	. . .	인	
원인행위액 등 기	. . .	인	항			자금지출부 등 기	. . .	인	
검 수	. . .	인	세 항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지출예산통계원장 채무확정액등기	. . .	인	목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적 요					거래은행	점포명 계좌번호: 예금주			
채 주	주소 상호 성명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 관 과									
추산필	과 장								

주 : 추산필란 삭제사용가능(이하 타지출결의서에서도 동일)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별지 제28호의2서식】

봉 급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앞면)						
담당자	팀 장	기 업 출납원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담당자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관			발 의	. . .	인
원인행위액 등 기	. . .	인	항			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	. . .	인
채무확정액 등 기	. . .	인	세항			자금지출부 등 기	. . .	인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	. . .	인	목			지급명령 번호	제 호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지방소득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행정공제회비			₩			
일금		건강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			
적 요	년 월 분 봉급							
채 주	과 외 명							
		수령대리인						
영 수	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 관 과								
추산필	과 장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별지 제28호의3서식 앞면】

구입과 지출결의서

증 제 호									
담당자	팀 장	기 업 출납원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담당자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발 의	. . .	인	
원인행위액 등기	. . .	인	관						
주 문	. . .	인	항		지출예산통계 원장등기		. . .	인	
납 품	. . .	인	세 항		자금지출 기록부기 등 기		. . .	인	
검 수	. . .	인	목		지급명령 번호		제 호		
채무확정액 등 기	. . .	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div>									
주민등록 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거 래 금 용 기 관					
위 금액을 청구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				
주 관 과									
추산필	과 장								
인	인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별지 제28호의4서식 앞면】

여 비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담당자	팀 장	기업출납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담당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관	발 의	. . .	인		
원인행위액 등 기	. . .	인	항	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	. . .	인		
채무확정액 등 기	. . .	인	세항	자금지출 기록부 등 기	. . .	인		
		목			지급명령 번호	제 호		
개산금에 대한 정 산	개 산 액		년 월 일	정 산 액		세 출 과 목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0px; margin: 0 auto; padding: 5px;">금</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0px; margin: 0 auto; padding: 5px;">₩</div>								
년 월 일	청 구 자 명 성 명		인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무처			봉급	급 호		영수자	인	
				급여	원		성 명	
주 관 자								
추 산 필 인	과 장 인	용 무			출 장 지			

※ 이밖에 운반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수선집행결의서 등 서식을 사천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작성 사용할 것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별지 제31호서식】

반 납 결 의 서

증 제 호											
담당자	팀 장	기업출납원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담당자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①	관			발	의	①	
원 인 행 위 등 기		①	항			지출예산등 제원장등기		①	
채 무 확 정 액 등 기				①	세항			자금지출 부등기		①
				①	목			지급명령 번호	제 호		
금		_____		W		_____					
지 급 일 자	년 월 일		①	고 지 서 발 행	년 월 일		①				
지급명령번호	제 호			납 부 기 한	년 월 일		①				
반 환 고 지 서 번 호	제 호			납 부 일	년 월 일		①				
반 납 자	주 소						성명		①		
주 무 과	반납사유										
추 산 필 ①	과 장 ①										

(주) 주서로 인쇄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사천시 규칙 제72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업종을 말한다.
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말한다.
11. “광역협력권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
12. “주력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13. “지역집중유치업종”이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1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8의2호,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나.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15. “사후관리기간” 이란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기업에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제2장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 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제5조(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설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사업개시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로 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본점 이전 보조금)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관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같은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요건에 해당할 것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며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천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업종은 별표 6과 같다.

-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1. 사천시와 최초 착공신고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이 경우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야 하며, 기업이 도내·관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3.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및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1.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40명(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 1년간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여 20명) 이상 및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보조금은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2. 설비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명(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 1년간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여 10명) 이상 및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6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 ③ 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서 정한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추가하여 신규로 상시고용한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 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장과 제2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을 보조금 교부일부터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1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조례 제1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
 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 등

제16조(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시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상남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같은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할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가능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 지원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
 2. 정착지원금 : 투자 사업장에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의 범위 이내
-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착지원금은 연도별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 중 어느 하나가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제18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2. 국내에서 연속으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제19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의 사업장의 관내 이전,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2. 융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융자 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 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4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는 총점이 50점 이상이고 대상기업 적격평가(사업실적,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을 일컫는다) 점수의 합이 35점 이상이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④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5장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21조(투자유치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

제22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 운용 규정을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제23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보조금 등의 정산)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 ④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시장은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6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금액 산정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마지막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장 보칙

제27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기업 또는 해외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관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관련 규정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규칙을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별표 1]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

구분	인정범위
<p>건설투자 비용</p>	<p>▶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p>기계장비 구입비용</p>	<p>▶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p>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p>	<p>▶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별표 2]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① 규칙 제12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특별지원)

신규 고용 추가 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	1%p
20명 이상 30명 미만	2%p
30명 이상 40명 미만	3%p
40명 이상 50명 미만	4%p
50명 이상	5%p

② 규칙 제18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	1%p
20명 이상 30명 미만	2%p
30명 이상 40명 미만	3%p
40명 이상 50명 미만	4%p
50명 이상	5%p

* 신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별표 3]

정산금액 산정기준

구 분	산정 방식
<p>대규모 투자 특별지원</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정산금액 = 보조금액 × (1 - 투자금액 미달률(고용인원 미달률))</p> <p>*투자금액 미달률 = $\frac{\text{투자계획금액} - \text{실제 투자금액}}{\text{투자계획금액}}$</p> <p>*고용인원 미달률 = $\frac{\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text{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p> </div> <p>※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신청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정산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p>
<p>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정산금액 = 보조금액 × (1 - $\frac{\text{투자금액 미달률} + \text{고용인원 미달률}}{2}$)</p> <p>*투자금액 미달률 = $\frac{\text{투자계획금액} - \text{실제 투자금액}}{\text{투자계획금액}}$</p> <p>*고용인원 미달률 = $\frac{\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text{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p> </div> <p>※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신청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정산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중 어느 하나가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p>

사 천 시 공 보

제 637호

[별표 4]

기금 용자 타당성 평가표

①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5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9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6
30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3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②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25명이상	20명 이상	15
20명 이상 2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	12
15명 이상 20명 미만	10명 이상 15명 미만	9
10명 이상 1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6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미만	3

년·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년·월								
상시고용인원								

사 천 시 공 보

제 637호

3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BB- 이상	16
B0 이상	12
CCC- 이상	8
CCC-미만	4

※ 융자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4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수
4 이상	20
3 이상 ~ 4 미만	16
2 이상 ~ 3 미만	12
1 이상 ~ 2 미만	8
1 미만	4

* 이자보상배율 = $\frac{\text{기업의 영업 이익액}}{\text{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5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은 2억원당 1점

6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7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신규고용	가점(10점 상한)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신청당시 상시고용인원	*2명당 1점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별표 5]

보조금 환수 기준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례 제26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조례 제26조제1항제7호) <p>(1)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연평균미달율을 계산하여 환수</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수액 = 보조금 × 연평균미달률 * 연평균미달률 =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 미달률의 합 / 5년 * 미달률 =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 상시고용인원 /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div> <p>※ 만일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해의 미달률은 100%로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10명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 150명 또는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100명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보조금 : 20명(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특별지원 : 20명(100억이상 투자), 10명(50억 이상 투자) <p>※ <u>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u></p> <p>(2)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내 휴·폐업(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사 천 시 공 보

제 637호

[별표 6]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대상 업종(제12조 관련)

구분	신산업분야	KSIC 코드
경남	항공부품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994)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조선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소(법인소재지)			전 화 번 호		
				F A X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 <input type="checkbox"/> 주 택 <input type="checkbox"/> 지원시설					
	소 재 지					
	면 적	부 지	건 축 물			
			m ²	m ²		
	건 물 구 조					
	건축허가일			준공일		
투자유형	<input type="checkbox"/> 신 축 <input type="checkbox"/> 기존건물 매입					
투자금액	금	원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원	주택 :		원	
지원시설 :		원				
<p>「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p>						
사 천 시 장 귀 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small>(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small>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보조금 신청서

학 교 명 (국 적)		설립자 성명 (국 적)	(남/여)
학교장 성명 (국 적)		본국 학력인정 여부	
소 재 지			
설립년월일		설립인가번호	
학 생 수	총 인원 명(남: 여:)	외국인학생수 명(남: 여:)	
교 사 수	총 인원 명(남: 여:)	외국인교사수 명(남: 여:)	
보조금 신청액	원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비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도외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보조금(융자금) 자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		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		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존사업장	<input type="checkbox"/> 폐쇄(청산) <input type="checkbox"/> 매각(양도) <input type="checkbox"/> 유지 <input type="checkbox"/>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구분		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투자 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	천원	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		명	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명
신규 고용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일부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사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사천시 규칙 제72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을 “제1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여”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의 규정”을 “제1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사천시 규칙 제72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은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자문기관의 대행) 조례 제20조에 따른 자문기관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시정 정책자문단에서 이를 대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제4조(준용) 법령·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및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사천시 규칙 제72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를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 를 “제22조제7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차
이량” 을 “차이량(30% 감면)”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사 천 시 공 보

제637호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면제),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20m³ 이내 면제),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10m³ 이내 면제) 등

제27조제3항 중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를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체없이” 를 “지체 없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며, 미납한 징수금에 채운 경우라도 채운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37 호

사천시 공고 제2019-1185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면허 번호	어업종류 (어업방법)	어장 위치	면적 (ha)	어업 시기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기간	허가일자 및 번호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사천 제30호	마을어업	서포 내구 지선	87.12	연중	'09.11.17 '19.11.16	'19.11.17. '29.11.16	'19.11.01. 제2019-5호	사천시 서포면 내구리	내구 어촌계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